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3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송옥주

박홍근 · 김용민 · 박지원

김남희 • 박해철 • 김남근

복기왕・김성환・조 국

정진욱 • 모경종 • 문정복

서미화 · 허 영 · 오세희

김한규 · 양부남 · 서영교

이기헌 • 이해식 • 민형배

김 현 • 이재강 • 강준현

손명수 · 정일영 · 박지혜

박민규 • 김문수 • 김준혁

추미애 • 진선미 • 김영호

정을호 · 고민정 · 이수진

황명선 • 문금주 • 노종면

송재봉 • 윤종군 • 박선원

안태준 의원(4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

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범 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보호 조치 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정서적 학대행위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 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포함한다)로서 반복적 · 지속 적이거나 일시적 · 일회적이라 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 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 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⑤ (생 략)

<신 설>

및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 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 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권리 보호 조치를 실시하 여야 한다.